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92

발의연월일: 2021. 3. 24.

발 의 자: 민형배·김민철·문진석

변재일 · 소병훈 · 신정훈

안규백 · 양경숙 · 양기대

이정문 · 황운하 · 김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육성해야 할 자질로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의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학교 존재의 목적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법의 권위주의적 용어 등도 함께 바꾸고자 합니다(안 제2조 등).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정의, 평등, 평화 및 관용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건전한 윤리의식 및 책임감을 함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교육 외에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도 힘써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를 "학생이 개성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유를 존중하며, 학생을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윤리의식"을 "시민의식"으로,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

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교내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u>홍익인간</u> (<u>弘益人間</u>)의 이념 아래 모든 <u>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u> (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학교교육) ① (생 략)

- ② 학교는 <u>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u>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③ 학교교육은 <u>학생의 창의력</u>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 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 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교육이념) -----<u>모든 시</u> 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도록----

제9조(학교교육)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의, 평등, 평화 및 관용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건전 한 윤리의식 및 책임감을 함양 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교육 외에 주민의 평생 교육을 위하여도 힘써야-----.
- ③ -----학생이 개성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유를 존중하며, 학생을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

④ (생 략)

제12조(학습자) ①・② (생 략) 저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u>윤리</u> 의식을 확립하고, <u>학교의 규칙</u> 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 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주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도	<u>록</u>
	④ (현행과 같음)		
제	12조(학습자) ①・②	(현	행과
	같음)		
	3	, -	시민
	의식		
		<u>-교</u> 1	내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